

「구미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정도 의원 외 10명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에서 추진 또는 지원하는 각종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구미 지역 축제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, 관광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“축제”에 대한 정의(안 제2조)
-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- 축제위원회 설치·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12조)
-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과 여비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, 제117조, 제130조
 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78조, 제79조, 제80조
- 부서검토: 낭만축제과 의견제출
-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, 축제위원회 설치의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, 이벤트, 무료 셔틀버스 제공 등의 지원 근거 마련, 지역 대표축제 발굴 및 유사축제의 통합·조정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설치하는 구미시 낭만문화축제 위원회의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집행기관에서는 구미시 낭만문화축제위원회가 관내 행사 통합 및 조정, 행사의 규모 확대 및 지역대표축제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